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면접합격자 공고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의 면접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11일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

1.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

합격자 명단	
응 시 번 호	성 명
2021-01-03	이 ○ ○

※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
2.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명단

예비합격자 명단	
응 시 번 호	성 명
2021-01-02	김 ○ ○

※ 예비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

3. 합격자 준비사항 안내

-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2021. 6. 15(화), 18:00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방법 :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※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, BANK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

- 제출서류(면접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)

- 채용신체검사서 1부,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계좌)

* 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」 제3조에서 지정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

4. 유의사항

- 면접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기간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(제출서류 미비 포함)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한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면접합격자 중 채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“채용 포기서”[서식 1 참조]를 작성하여 2021. 6. 15(화)까지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최종합격자 발표

- 발표일 : 2021. 6. 22(화) 예정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
 - *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함
- 문의처 :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☎044-201-5151

채용 포기서

- **시험구분** : 제1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
 ▪ **응시번호** : _____
 ▪ **성명** : _____ ▪ **생년월일** : _____ - ____ - ____
 ▪ **주소** : _____
 _____ (우편번호 _____ - _____)
 ▪ **전화번호** : 일반전화 _____ - _____, 휴대전화 _____ - _____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
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 년 월 일

성명 : (서명/인)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귀하

※ **괄호안 포기사유** 예시 : 학업, 지방공무원합격(임용), 취업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 ※ **성명** 옆에는 반드시 **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
[서식 2]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12. 24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사 진
(3.5cm × 4.5cm)

※ 압인 또는 계인

검 사 내 용

키	cm		체 중	kg	
허리둘레	cm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종 양 질 환			이 비 인 후 질 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 부 X선 검 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